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예술인 복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관 등은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 공포, 2024. 2. 9. 시행)됨에 따라,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,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. ~ 1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5(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)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”란 성명,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말한다.

제4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 제4조의5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(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②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	제2조의5(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)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”란 성명,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말한다. 제4조의5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
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

<신 설>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1. 예술활동증명-----

③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2718